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1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47조의4)

개정안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3항의 감면 요건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¹⁾에 따라 내진성 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내진 안전성을 증진 하고,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기관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은 생활속에서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민간, 기존·신규시설물 을 모두 포함함. 인증 절차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이후 인 증기관에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서·명판을 취득함.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현황은 357건임. 이 중 업무시설은 124건, 주 택 57건, 노유자시설 45건, 의료시설 28건, 교육시설 26건, 기타 87건임.

개정안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 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축건물 중에서 지진안전 인증건의 수가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으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의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12억 9,600만원임.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2조의2에서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 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0.9억원(연평균 0.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